



보도 시점 2024. 4. 15.(월) 14:30 배포 2024. 4. 15.(월) 09:00

특정업체 특혜 제공, 쪼개기 수의계약 등 지방공기업 위법·부적정 업무처리 80건 적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5개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

- ▶ (점검결과)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보상비 지급 부적정, 설계변경 부적정 등 사업 전반에서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의 위법·부적정 사례 적발
- ▶ (조치계획)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33건), 영업정지(8건), 과태료(53건) 처분 요구
보상비 과다집행, 설계변경 부적정 등 77억 원은 환수·감액 조치
- ▶ (제도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사례 전파, 내진성능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 점검 개요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23년 말 기준 총 412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 중

○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총 5개월간 ('23.8~12월) 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획·설계, △발주 및 계약, △보상, △사업관리, △시설관리·운영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이 적발되었으며, 분야별 주요 지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획 및 설계 부적정)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VE*를 미시행한 사례 등 총 8건 적발

* (Value Engineering) 각 공법의 경제성, 현장적용 타당성을 비교하여 우수한 대안을 선정

② (발주 및 계약 부적정)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 적발

③ (보상 부적정)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②,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③ 등 총 6건 적발

④ (사업관리 부적정) 분량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④,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 적발

⑤ (시설관리 및 운영 부실 등)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 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 적발

□ 추진단은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른 고발(33건)·영업정지(8건)·과태료(53건) 처분을, 부적정 집행금액 77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또는 감액을 각 기관에 요구하여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제도개선 방안

□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하여,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지방공기업에 사례 전파 및 교육 실시

- 이번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부적정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단계별 지적사항과 관계 법령, 행정규칙 등을 정리하여 전파할 계획이다.

②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관리 강화

- 5개 기관이 보유한 기존시설물 921개소 중 624개소가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누락되었고, 이 중 592개소가 영구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가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내진성능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③ 건축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 건축물의 견실시공을 위해 '16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중요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 공정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이행력을 담보할 「건축법」상 벌칙 규정이 없다.

* 이번 점검에서도 동영상 촬영의무 위반업체를 적발하였으나 처벌 불가

- 따라서 최근의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촬영의무에 대한 이행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건축법」에 따른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 지방공기업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와 기관별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부적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참고: 주요 지적사항

담당 부서 <총괄>	국무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성민 (044-995-2020)
	부패예방추진단 국책사업과	담당자	조사관 신기표 (044-995-2021)
담당 부서	행정안전부	책임자	과장 박종근 (044-205-3961)
	지방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변석영 (044-205-3970)

1 특허공법 선정 부적정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부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최종 선정되도록 하여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

- 지자체 A는 지방도 재구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가가 더 높은 개질(改質)아스콘*을 과도하게 설계 반영(전체 포장면적의 52%)하고,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개질아스콘 공법에 대한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B업체로 설계에 반영함
 - * 개질(改質)아스콘이란 내구성, 평탄성 등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아스팔트콘크리트를 말하며, 일반 아스팔트콘크리트에 비해 고가(약 1.5~2배)임
- 지방공기업 C는 개질아스콘 공급사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고, 지방계약법에 위배된 제안참여조건 완화, 과도한 지역업체 가점부과, 공고 당일 배점기준 변경 등 B업체에 유리하게 공모 진행
 - * C는 B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조달청에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공모를 통한 재선정 절차를 진행
- 결국, B업체가 공급사로 선정되도록 하여 14억 원의 특혜를 제공한 의혹

2 보상민원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지구의 하수처리수 방류를 반대하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 주민지원 사업 비용 64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토지보상법령에 근거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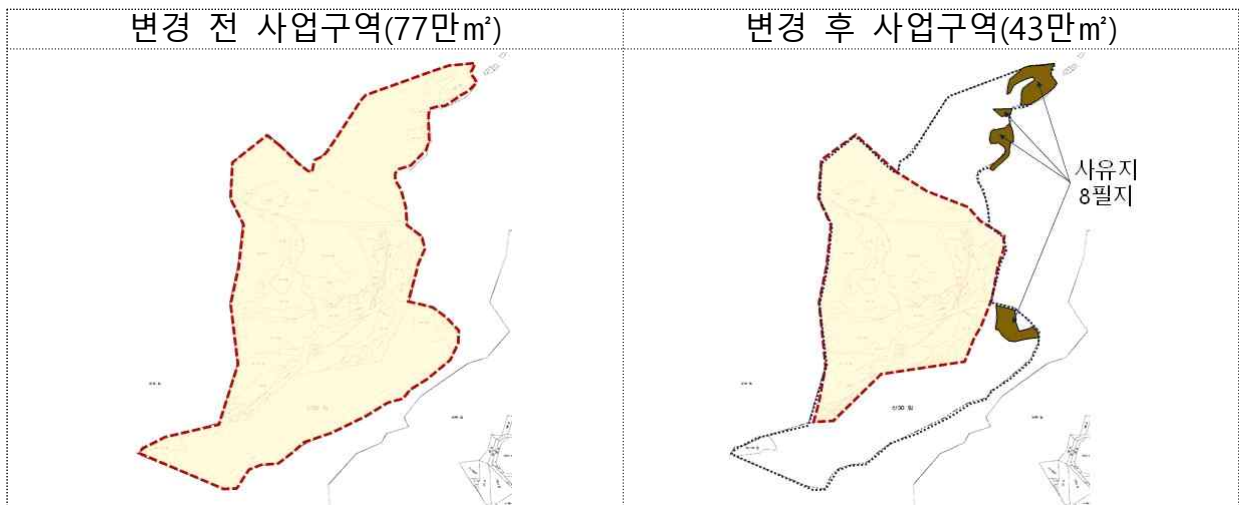
- 지자체 D는 ○○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지점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다르게 계획했다가 뒤늦게 변경하면서 집단 민원을 야기하였고, ○○지구 준공인가시 '민원 해소'를 이행조건으로 하여 지방공기업 E를 통해 법적근거 없는 민원처리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지방공기업 E는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실제 어업피해액을 확인하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법적근거가 없고 어업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64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잘못된 선례를 남김

3 지역개발사업 선보상 부적정

△△단지 조성사업의 사전보상 과정에서 사유지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인지하고도 보상금 26억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예산을 낭비함

- 지자체 F는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으로부터 ‘국유지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지정권자인 광역지자체장에게 사업구역 변경안을 2차례 보고하는 등 사유지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이미 인지하였으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 G에 사유지 보상 중지를 통보하지 않음
- 지방공기업 G는 사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사유지 8필지의 보상여부를 지자체 F에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토지보상금을 지급
 - * G는 보상 제외대상 필지 해당 여부를 공문으로 질의하였으나, F로부터 회신받은 바 없음
- 결국, 보상금 지급 전에 8필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됨을 두 기관 (F, G)이 모두 인지하고도 총 26억 원의 보상금을 불필요하게 집행



4 분양 완료된 토지(사유지)에 추가공사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토지 매수인의 민원을 초래하였고, 분양 완료된 토지에 옹벽 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12억 원을 낭비함

- 지자체 H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획지 분할, 획지 내 경사면 등 설계를 부실*하게 하여, 분양 후 차량의 진출입이 어렵고 토지이용에도 제약을 야기
 - * (소규모 획지) 79획지 중 35획지가 900㎡ 미만으로 '산업입지 개발지침'에 위배 (획지내 경사) 소획지 전면에 최대 2.3m, 후면에 최대 4.3m의 경사면 존치
- 지자체 H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사면 제거비용 청구 불가' 조건을 공고문 및 매매계약서에 명시하여 획지를 분양하였으나 토지 매수인의 민원이 발생
- 지자체 H는 민원해소를 위해 계약내용과 다르게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추가공사(경사면 제거, 옹벽 설치)를 실시하기로 승인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기업 I를 통해 추가공사를 시행하여 토지 매수인에게 특혜 제공

소규모 획지 (전면단차 2.3m)



공사 완료 후(경사면 제거, 옹벽 설치)

